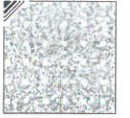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동성출력용바코드

# 서울중앙지방법원

8/29 수령

## 제10-3민사부

### 판 결

사 건 2023나4792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호사카유지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903호 법무법인 우리 서초분사무소  
(서초동, 화평빌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월드

담당변호사 김희태, 박태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남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김병헌

서울 성동구 동호로 100, 116동 105호 (금호동3가, 두산아파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환

피고, 피항소인

1. 정지만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37길 16, 204호 (상계동)

2. 고현형

서울 강서구 월정로14길 19, 204호 (화곡동, 아줄리움)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20. 선고 2021가단5021572 판결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음성출력용바코드

변론종결 2024. 7. 23.

판결선고 2024. 8. 27.

### 주 문

- 제1심판결 중 피고 김병현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4.부터 2024.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김병현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김병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피고 김병현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 원고와 피고 정지만, 피고 고현형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김병현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중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를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로 경정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김병현은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김병현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정지만은 20,000,000원, 피고 고현형은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하라.

## 2. 항소취지

### 가. 원고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김병헌은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4.부터 2023.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김병헌과 연대하여 위 돈 중 피고 정지만은 5,000,000원, 피고 고현형은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11. 27.부터 2023. 6.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나. 피고 김병헌

제1심판결 중 피고 김병헌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김병헌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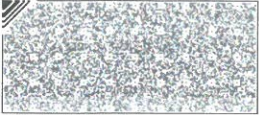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피고들이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다항의 표 순번 1 내지 19 기재와 같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을 하여 원고를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 김병헌의 위 표 순번 1 내지 3, 5, 6, 8,

1) 원고가 제1회 변론기일에 항소취지를 명확하게 정정하라는 명을 받고 제출한 2024. 7. 4.자 준비서면의 내용에 따른다.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12 기재 각 행위, 피고 정지만의 위 표 순번 14 기재 행위, 피고 고현형의 위 표 순번 18 기재 행위는 모욕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 행위들은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패소 부분 중 위 표 순번 9, 15, 16, 19 기재 각 행위에 관하여 불복하였고 피고 김병헌은 패소 부분 전부에 관하여 불복하였으며 피고 정지만, 피고 고현형은 불복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나 피고들이 불복하지 않은 위 표 순번 4, 7, 10, 11, 13, 14, 17, 18 기재 각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제1심판결 이유 중 위 각 행위에 관한 부분은 제외하고 인용한다).

## 2.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다항의 표 순번 5 기재 행위 내용 부분을 "페이스북에서 원고에게 '위안부 계약 당사자는 포주인데 일본군이 계약기간을 지켜주었다고? 뭘 또 라이 같은 소리야?'라는 글을 게시함('또라이 같은'이라는 표현이 부정적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에 해당하기는 하나, 앞뒤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본군 위안부의 성격과 개념에 대한 원고와 피고 김병헌의 견해 차이를 거칠고 무례하게 표현한 것에 가깝고,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불인정)."으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다항의 표 순번 6 기재 행위 내용 부분을 "페이스북에서 원고에게 '이건 또 무슨 신학설이야? 책 한권에 온갖 신학설 다 실어놓은 호선생, 석학 나셨네~'라는 글을 게시함('신학설', '호선생', '석학 나셨네'와 같은 표현이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불인정)."으로 변경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6, 17행(표 내부 포함, 이하 같다)의 "을가 제1 내지 9호증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음성출력용바코드

(가지번호를 따로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을가 제1 내지 9, 15호 증(가지번호 있는 증거 포함, 이하 같다)"으로, 같은 쪽 제26행의 "주장취지"를 "주장"으로, 같은 쪽 제27행의 "피고 김병현"을 "피고 김병현, 피고 고현형"으로, 같은 쪽 제28행의 "피고는"을 "위 피고들은"으로 각 고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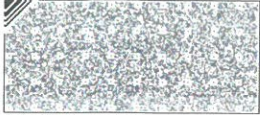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3행의 "피고는"을 "위 피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3행의 "5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같은 쪽 제15행의 "피고 김병현은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를 "피고 김병현은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로, 같은 쪽 제17행의 "2023. 6. 20.까지는"을 "2024. 8. 27.까지는"으로, 같은 쪽 제20행의 "위 돈 중 500,000원에 대하여"를 "위 돈 중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로, 같은 쪽 제21행의 "같은 2023. 6. 20.까지는"을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6. 20.까지는"으로 각 고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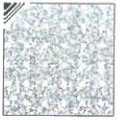
###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김병현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김병현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김병현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명한 피고 김병현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김병현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김병현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의 나항 중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의 다항에 비추어 볼 때 "각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의 오기임이 분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상아

이 상 아



판사

송영환

송 영 환



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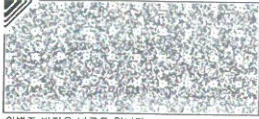
김동현

김 동 현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 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용 바코드입니다.



www.scourt.go.kr



음성출력용바코드

# 정본입니다.

2024. 8. 28.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정창원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문서 좌측 상단의 바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홈페이지 및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